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3.

행정재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보건행정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13.)  
“원안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보건소장 : 양오승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「13.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과 관련하여,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건강도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 (안 제8조제2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입법예고(2023. 7. 7. ~ 2023. 7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’ 를 이유로 제출한 것으로 보임.
- 본 조례는 현행 조례 제1조(목적)과 같이 “강남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,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 목적” 이 있음.
 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를 2011년 개최 이후 미개최하는 등 개최 실적 저조하고, 운영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을 매 2년마다 위촉하여 비효율적이라는 것임. 또한 현행 조례 제9조(위원회 회의) 제1항을 보면, 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” 로 되어 있어 사실상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.
- 본 조례는 제명과 같이 강남구 보건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이며, 현행 조례 제5조와 같이 보건정책의 기본적인 핵심을 계획할 근거를 담고 있는데,
  - 이 기본계획을 보건정책적으로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, 기본계획 수립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, ‘건강도시 운영위원회’ 가 비활성화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.
  - 오히려, ‘건강도시 운영위원회’ 를 중심으로 하고, 다양한 강남구 보건행정 관련 조례들 내의 각종 위원회를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소분과위원회로 재구성 및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  - 아니면, 실제 보건행정에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」가 불필요하고 실효성은 없는 것은 아닌지 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이며,

행정적 실효성이 높지 않다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 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<u>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,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### 4. 작성자

- 보건행정과 지방간호주사보 연진현(02-3423-7018)